

농산자조금 조성 및 자조금단체 육성에 관한 법률안 (임미애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956
----------	-------

발의연월일 : 2026. 5. 13

발 의 자 : 임미애 · 박지혜 · 권향엽
진성준 · 서미화 · 정일영
이수진 · 이연희 · 김남근
김 윤 · 송옥주 · 박해철
최혁진 · 이재관 · 윤준병
신장식 의원(16인)

제정이유

이상기후로 인한 재배환경 변화와 시장 개방 확대에 따른 경쟁구조 심화로 인해 농업의 생산 기반이 약화되어 농산물 수급이 불안정해지고 있는 상황임. 이러한 문제는 개별 농업인이 대응할 수 없으며 품목을 대표하는 자조금단체를 중심으로 수급조절과 품목 경쟁력 향상을 추진해야 하지만, 자조금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가 부족하고 자조금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여 농업인의 자율적 참여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함. 이를 위해 자조금단체의 공적 기능을 강화하고 회원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자조금을 체계적으로 운용 및 관리하기 위해 자조금단체의 권한과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농업인과 품목 산업의 안정적인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농산자조금 및 자조금단체에 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산물의 품질향상과 소비촉진, 생산자의 공동이익 증진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농업인 및 소비자의 권익보호와 농업의 안정적 발전에 이바지함으로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농산자조금이란 자조금단체가 해당 농산물의 소비촉진, 품질향상, 자율적인 수급조절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성·운용하는 자금으로 함(안 제2조제1호).
- 다. “자조금단체”란 해당 농산물에 대하여 농산자조금을 조성·운영하기 위해 농업인들이 이 법에 따라 설립한 법인을 말함(안 제2조제2호).
- 라. 농산자조금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르도록 함(안 제3조).
- 마. 자조금단체(안 제4조부터 제24조까지)
- 1) 자조금단체를 설립하려면 당연회원의 자격을 가진 50인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과 자조금단체설립계획서를 작성하여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함.
 - 2) 자조금단체의 회원은 당연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분하되, 해당 농산물의 농업인등은 당연회원으로 하며, 특별회원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조금단체가 정관으로 그 자격을 정할 수 있도록 함.

- 3) 자조금단체에 회원으로 구성되는 총회를 두어 거출금의 납부 및 생산·유통자율조절의 결정 등의 사항을 의결하도록 하고, 농업인 등의 수가 15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 4) 자조금단체에 이사회를 두고 자조금의 조성·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함.
- 5) 자조금단체는 품목 특성 및 운영 여건을 고려하여 5년마다 중장기 운영 및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자조금 사업의 계획, 집행과 자조금의 운용 및 성과 등에 대한 보고서를 매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평가를 받아야 함.
- 6) 자조금단체가 해당 농산물의 생산·유통자율조절을 수행하려면 대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 7) 자조금단체는 해산사유의 발생, 회원 10분의 1 이상의 해산요청,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설립인가 취소에 의하여 해산됨.
- 8) 자조금단체간 정보교류 등 자조금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상호협력을 위하여 자조금단체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

바. 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안 제25조부터 제35조까지)

- 1) 하나의 농산물 품목에는 하나의 농산자조금만을 설치·운용·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농산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2개 이상

의 품목을 통합하거나 하나의 품목을 분리할 수 있도록 함.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조금단체에 출연하거나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3) 자조금은 거출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또는 지원금 등으로 구성하되, 농산물의 자율적 수급 안정 및 생산유통 자율조절 이행 등의 용도에 사용하도록 함.

4) 자조금단체의 회원은 총회에서 의결한 거출금을 납부기한 내에 자조금단체에 납부하여야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납부면제 기준에 해당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농업인등에 대하여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그 납부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5)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은 거출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조금단체의 회원에 대하여는 해당 농산물의 생산, 유통, 수급 조절 등을 위한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

사. 자조금회계는 특별회계와 일반회계로 구분하여 운영하도록함.(안 34조)

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자조금단체를 육성하고 그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업무를 전담하는 자조금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38조).

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자조금단체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자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39조).

차. 「농수산물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또는 22조에

따라 설립된 자조금단체에 대한 경과조치 조항을 둠(부칙 제5조).

농산자조금의 조성 및 자조금단체 육성에 관한 법률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산자조금 및 자조금단체에 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산물의 품질향상과 소비촉진, 생산자의 공동이익 증진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농업인 및 소비자의 권익 보호와 농산업의 안정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산자조금”(이하 “자조금”이라 한다)이란 자조금단체가 해당 농산물에 대하여 소비촉진, 품질향상, 자율적인 수급조절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성·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
2. “자조금단체”란 해당 농산물에 대하여 제1호에 따른 농산자조금을 조성·운영하기 위해 농업인들이 이 법에 따라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
3. “농산물”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에 따른 농산물을 말한다. 다만,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축산물은 제외한다.
4. “농업인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농업법인

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5. “거출금”이란 자조금단체의 회원이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위하여 자조금단체에 납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자조금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제2장 자조금단체

제4조(법인격) 자조금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제5조(사업) 자조금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제28조에 따른 자조금의 용도로 정한 사업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제6조(설립인가 등) ① 자조금단체를 설립하려면 제9조제1항에 따른 회원의 자격을 가진 50인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과 자조금단체

설립계획서를 작성하여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자조금단체 설립계획서의 작성·제출에 관한 사항, 설립하려는 자조금단체의 해당 농산물에 대한 대표성 등 인가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창립총회의 의사(議事)는 개의(開議)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 의서를 제출한 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설립등기) ① 자조금단체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자조금단체의 설립등기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정관의 기재사항) 자조금단체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및 명칭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사업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선출, 정수 및 임기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자격, 권리·의무 및 특별회원의 가입·탈퇴에 관한 사항
6. 총회, 대의원회,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거출금 및 그 회계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존립시기와 해산 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와 사유 및 남은 자산의 처리방법

10. 공시 및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9조(회원) ① 자조금단체의 회원은 당연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분한다.

② 해당 농산물의 농업인등은 당연회원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농업인등이 아닌 자 중 자조금의 효율적인 조성·운용 및 거출금의 공정한 분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자조금단체가 정관으로 그 자격을 정하여 특별회원으로 둘 수 있다.

④ 회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출금을 납부하고 자조금단체가 추진하는 사업과 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자조금단체를 설립할 수 없으며, 농산물의 용어를 사용한 자조금·자조금단체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11조(총회) ① 자조금단체는 회원으로 구성되는 총회를 둔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자조금단체의 합병·분할 또는 해산

3. 거출금의 산정기준, 금액 및 납부면제의 기준
4. 사업계획, 자조금운용계획 및 결산의 승인
5. 감사보고서의 승인
6. 임원의 선임 및 해임
7. 제17조에 따른 생산·유통 자율조절의 결정
8. 총회 운영 규정의 제정 및 개정
9.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및 이사회에서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총회는 회장이 주재하며,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총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2조(대의원회) ① 회원의 수가 150명을 초과하는 자조금단체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를 갈음할 수 있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대의원회의 대의원은 회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대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선거로 선출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대의원회에 관하여는 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⑤ 대의원의 후보자의 자격, 등록 및 선거 등에 선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임원) ① 자조금단체의 임원으로 회장, 부회장, 이사 및 감사를 둔다.

② 임원의 수, 임기, 권한 및 직무 등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4조(이사회) ① 자조금단체의 사업 수행과 자조금의 조성·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자조금단체에 이사회를 두어야 하며, 각 자조금단체의 정관에 따라 이사회에 위원회를 별도로 둘 수 있다. 이 경우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둔다.

②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이사회를 설치하는 경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을 선임할 수 있다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5조(자조금 운용과 관리) ① 자조금단체는 매년 자조금운용계획안을 작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조금운용계획안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자조금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자조금운용계획은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지출계획은 주요항목과 세부항목으로 구분하며, 주요항목과 세부항목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 자조금단체는 제1항에 따른 자조금운용계획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항목의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자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변경하려는 지출금액이 총사업비의 100분의 5 이하인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자조금 운용에 사용되는 비용은 자조금 조성규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절차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6조(자조금단체의 자조금 운용 평가 등) ① 자조금단체는 품목 특성 및 운영 여건을 고려하여 5년마다 자조금단체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자조금단체는 자조금의 건전한 운용을 위하여 자조금 사업의 계획, 집행 및 자조금의 운용 성과 등에 대한 보고서를 매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보고서를 받은 경우에는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제22조에 따른 개선 등 조치명령, 제25조에 따른 자조금의 통합 및 분리, 제26조에 따른 출연 또는 지원 등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중장기 발전계획 및 제2항에 따른 보고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생산·유통 자율조절) ① 자조금단체는 정부 및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법인·생산자단체와 협력하여 해당 농산물의 수급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업무(이하 “생산·유통 자율조절”이라 한다)를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의원회에서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경작 및 출하 신고
2. 품질·중량 등 시장출하규격 설정
3. 수출 등 유통조직 지정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회원은 제1항에 따른 생산·유통 자율조절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생산·유통 자율조절을 위한 구체적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자조금단체의 해산 사유) 자조금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1. 정관으로 정한 해산 사유의 발생
2. 총회의 의결
3. 합병 또는 분할
4. 설립인가의 취소

제19조(총회의 의결에 따른 자조금단체의 해산) ① 회원은 제18조에 따른 자조금단체의 해산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회원 10분의 1 이상의 서명을 받아 총회에 자조금단체의 해산을 요청할 수 있다.

② 회장은 제1항에 따라 자조금단체의 해산 요청을 받으면 그 요청일부터 14일 이내에 요청 사유와 찬반투표의 일정 등을 공표하여야 한다.

③ 회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 자조금단체의 해산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이 경우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해산을 의결한다.

④ 회장은 제3항에 따른 투표 결과를 지체 없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투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제20조(청산 등) ① 자조금단체가 해산하면 파산으로 인한 경우 외에는 회장이 청산인(清算人)이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산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재산 상황을 조사하고 재무상태표를 작성하여 재산 처분의 방법을 정한 후 이를 총회

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2회 이상 총회를 소집하여도 총회가 개의되지 아니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을 수 없으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승인으로 총회의 승인을 갈음할 수 있다.

④ 해산한 자조금단체의 청산 잔여재산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제21조(준용규정) 자조금단체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2조(개선 등 조치명령) 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자조금단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26조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지원을 중단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자조금단체가 설립인가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2. 자조금단체의 회원 중 거출금 납부의무를 이행한 자가 차지하는 비율 또는 회원이 납부해야 하는 거출금 총액에 대하여 회원이 실제 납부한 총액의 비율(이하 “거출률”이라 한다)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인 경우

②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명한 경우에는 제26조제1항에 따라 출연 또는 지원을 한 지방자치단체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개선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해당 자조금을 존치할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자조금단체의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23조(자조금단체의 해산에 따른 수납중지 등) ① 회장은 제19조제3항에 따라 자조금단체의 해산이 의결된 경우 또는 제22조제3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자조금단체의 설립인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즉시 회원 및 수납기관에 그 사실을 알리고 자조금단체 또는 수납기관을 통한 거출금 수납을 중지시켜야 한다.

② 제19조제3항에 따라 자조금단체의 해산이 의결되기 전 또는 제22조제3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해당 자조금단체의 설립인가를 취소하기 전에 이미 납부된 거출금은 반환하지 아니하며, 납부가 지연되었던 거출금은 납부하여야 한다.

③ 자조금단체는 제19조제3항 또는 제22조제3항에 따른 자조금단체의 해산이 결정된 때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또는 지원금의 집행 후 남은 금액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24조(자조금단체연합회의 설립) ① 자조금단체는 자조금단체 간 협력사업, 정보 교류 등을 통한 자조금사업의 효율적 운영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상호 협력 증진을 위하여 자조금단체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연합회는 제1항의 사업 추진을 위한 사무국을 둘 수 있으며, 사

무국은 법 제38조에 따른 자조금통합지원센터를 우선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3장 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

제25조(자조금의 조성) ① 하나의 농산물 품목에는 하나의 자조금을 조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품목을 통합하거나 분리하여 자조금을 조성하도록 할 수 있다.

1. 2개 이상의 품목을 하나로 통합하여 자조금을 설치하려는 경우
2. 하나의 품목을 분리하여 자조금을 설치하려는 경우

제26조(출연 또는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조금단체에 출연하거나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 또는 지원금의 지급, 사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자조금의 재원) 자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된다.

1. 거출금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또는 지원금
3. 농산물의 생산·유통·가공·수출·수입 등과 관련된 자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지원금

4. 자조금 운용수익금 등 그 밖의 수익금

제28조(자조금의 용도) 자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되어야 한다.

1. 농산물의 소비촉진 및 홍보
2. 농산물의 자율적 수급 안정
3. 제17조에 따른 생산·유통 자율조절 이행
4. 회원, 소비자, 제30조제3항에 따른 대납기관 및 제32조제2항에 따른 수납기관 등에 대한 교육 및 정보제공
5. 유통구조 개선 및 수출 활성화 사업
6. 농산물의 생산 및 소비동향의 파악, 품질 및 생산성 향상, 안전성 제고 등을 위한 사업 및 이와 관련된 조사·연구
7. 거출률 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
8. 자조금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
9. 그 밖에 자조금의 조성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자조금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9조(거출금의 산정기준) 자조금단체는 해당 품목 재배면적이나 출하액, 판매액 등 회원별 경영규모를 기준으로 거출금의 규모를 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제30조(거출금의 납부) ① 자조금단체의 회원은 총회에서 의결한 거출금을 납부기한까지 자조금단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경영규모가 해당 자조금단체의 정관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인 농업인등에 대

하여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그 납부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자조금단체 회원이 제1항에 따른 거출금을 2개 이상의 자조금단체에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납부 방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자조금단체는 거출금 납부 및 수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거출금을 대납하는 기관 또는 단체(이하 “대납기관”이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④ 자조금단체는 회원에게 거출금 납부안내서를 직접 발송하거나 공시 등의 방법으로 납부대상, 납부금액, 납부방법 등 거출금 납부에 관한 사항을 미리 알려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거출금의 납부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31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제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생산·유통하거나, 제30조제1항에 따른 거출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조금단체의 회원에 대하여는 해당 농산물의 생산·유통·수급조절 등을 위한 각종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제32조(거출금의 수납위탁) ① 자조금단체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자조금의 수납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자조금단체는 제1항에 따른 거출금의 수납을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이하 “수납기관”이라 한다)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업무수행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수납기관은 영업정지, 휴업 또는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회원 또는 대납기관의 수납의뢰를 거부하거나 수납업무를 중단할 수 없다.

④ 회원 또는 대납기관이 수납기관에 납부하지 아니한 거출금은 자조금단체가 직접 징수할 수 있다.

⑤ 수납기관은 거출금을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거출금의 수납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33조(과오납금의 환급) 자조금단체는 회원이 착오 등으로 납부한 과오납금(過誤納金)의 환급을 청구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환급하여야 하며, 자조금단체가 확인한 과오납금은 회원의 청구가 없는 경우에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하여야 한다.

제34조(자조금회계) ① 자조금단체의 회계는 특별회계와 일반회계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특별회계는 제27조에 따른 재원을 관리하기 위한 회계로 하고, 일반회계는 이월금과 자조금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수입 등을 관리하기 위한 회계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회계 구분의 기준 및 회계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35조(공시) 자조금단체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제36조(통계 등의 작성·관리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통계 및 농업인등의 현황, 경작신고, 농어업경영정보 등을 포함한 통계자료(이하 “통계등”이라 한다)를 작성·관리하고, 매년 자조금단체, 대납기관 및 수납기관에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계등의 작성·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공 또는 해당 기관에서 관리하는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의 정보 이용 등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통계등을 작성·관리하는 공무원이나 공무원이었던 사람과 제41조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 또는 법인·단체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른 통계등의 작성·관리 및 제공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농어업경영정보 등의 이용) ① 자조금단체는 임원·대의원 선출과 회원 명부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농어업경영정보 중 해당 품목 농업인의 개인정보(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농지의 소재지와 면적 및 경영체 등록번호를 말한다) 및 농업법인의 정보(법인 명칭, 주소, 연락처, 농지의 소재지와 면적 및 경영체 등록번호를 말한다)를 제공하여 줄 것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필요성 여부를 검토한 후 이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 및 법인의 정보를 제공받은 자조금단체는 임원 및 대의원 선출, 거출금 산정 및 부과 등을 위한 회원 명부 작성의 목적으로만 이를 사용하여야 하며, 회원 명부 작성이 끝나는 즉시 제공받은 개인정보 및 법인의 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조금단체에 제공된 개인정보의 파기여부 등을 확인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농업인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제38조(자조금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자조금단체를 육성하고 그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업무

를 전담하는 자조금통합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조금 신규 조성 지원
2. 자조금 운용 가이드라인 개발 및 보급
3. 자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개발 및 운영 지원
4. 자조금 통합 콜센터 운영 및 지원
5. 자조금 인식개선을 위한 통합 홍보
6. 교육·홍보 등 분야별 매뉴얼 개발
7. 자조금 담당 직원에 대한 교육 등 역량 강화 지원
8. 제36조에 따른 통계등 작성·관리 및 제공
9. 그 밖에 자조금단체의 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자조금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자조금단체의 효율적인 거출을 위하여 자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조금통합관리시스템의 운

영 및 관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및 자조금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자조금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40조(지도·감독)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자조금단체를 지도·감독하며 자조금단체, 대납기관 및 수납기관(이하 “자조금단체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조금에 관한 업무·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실에 출입하여 장부나 그 밖의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려면 검사 7일 전까지 검사의 일시, 목적 및 내용 등을 자조금단체등에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미리 알리면 검사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자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도·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41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센터 또는 자조금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장 벌칙

제42조(벌칙) ① 제36조제3항을 위반하여 개인 또는 법인·단체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34조를 위반하여 회계처리를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3조(양벌규정) 자조금단체의 대표자나 그 단체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단체의 업무에 관하여 제42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자조금단체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자조금단체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0조를 위반하여 자조금과 동일한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2.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납을 중지하지 아니한 자
3. 제28조에 따른 자조금의 용도를 위반하여 사용한 자
4. 제3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거출금 수납의뢰를 거부하거나 거출금 수납업무를 중단한 자
5.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서를 거짓으로 제출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7조를 위반하여 해당 품목을 생산·유통한 자
2. 제30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조금단체가 결정한 거출금 납부일자 이내에 거출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
3. 제30조제4항을 위반하여 거출금 납부에 관한 사항을 회원에게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알린 자
4. 제35조를 위반하여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자
5. 제37조제2항을 위반하여 제공받은 개인정보 및 법인의 정보를 즉시 파기하지 아니한 자
6. 제40조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7. 제40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관계 서류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거출금의 납부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면제 사유가 계속되고 있거나 이 법 시행 후 발생한 사유가 있어 거출금 납부를 면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오납금 반환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과오납금을 반환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농수산물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5조(자조금단체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 「농수산물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자조금을 설치한 자조금단체는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 또는 제22조에 따라 자조금을 설치한 자조금단체는 이 법 시행 후 3년 이내에 제8조 각 호에 따른 사항을 포함하도록 정관을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기존 자조금단체는 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으면 이 법에 따른 자조금단체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 기존 자조금단체는 제2항에 따른 설립등기를 마치면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④ 자조금단체는 설립등기일에 기존 자조금단체의 모든 권리·의무·재산·직원 및 회원(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회원이 될 수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을 승계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자조금단체가 승계하는 권리·의무에 관한 등기부나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기존 자조금단체의 명의를 이 법에 따른 자조금단체의 명의로 본다.

⑥ 자조금단체의 설립 당시 종전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설립된 의무자조금단체의 대표자, 이사, 총회의 감사 및 대의원은 자조금단체의 정관에 따른 회장, 이사, 감사 및 대의원의 자격을 갖춘 경우 각각 그 자조금단체의 회장, 이사, 감사 및 대의원으로 보며,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설립된 임의 자조금단체의 대표자, 이사 및 임의자조금위원회의 감사는 자조금단체의 정관에 따른 회장, 이사 및 감사의 자격을 갖춘 경우 각각 그 자조금단체의 회장, 이사 및 감사로 본다. 이 경우 회장, 이사, 감사 및 대의원의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⑦ 자조금단체의 설립 이전에 기존 자조금단체가 행한 행위 또는 기존 자조금단체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자조금단체가 행한 행위 또는 자조금단체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로 본다.

⑧ 이 법 시행 당시 종전 「농수산물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가 기존 자조금단체에 출연한 출연금은 제2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정부의 출연금으로 본다.

제6조(자조금에 대한 경과조치) 기존 자조금단체가 부칙 제4조제2항에 따른 설립등기를 마치면 종전 「농수산물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기존 자조금단체에 설치된 농산물자조금은 이 법 제25조에 따라 조성된 자조금으로 본다.

제7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농수산물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2항제1호 중 “「농수산물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5조”를 “「농산물자조금 조성 및 자조금단체 육성에 관한 법률」 제26조”로 한다.

② 「밀산업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호 중 “「농수산물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을 “「농산물자조금 조성 및 자조금단체 육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 「농수산물직접판매촉진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